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2016. 6. 24. 제정 2019. 9. 26. 개정 2020. 12. 2. 개정 2021. 10. 27. 전부개정
2023. 1. 4. 개정 2024. 7. 2. 개정 2024. 11.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6조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중 배상책임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상책임”이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 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한다.
2. “피공제자”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의 장과 그 교직원을 말한다.
3. “공제사업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이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4. “공제사고”란 안전원의 관련 규정, 지침, 약관에 따라 회원 또는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5. “공제급여”란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원의 관련 규정, 지침, 약관에 따라 회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말한다.
6. “공제가입증서”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전원이 회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보상한도액”이란 안전원과 회원이 약정한 금액으로서 피공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중 안전원이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8. “자기부담금”이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0.>
9. “영업일”이란 안전원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로, 다음 각 목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나. 근로자의 날

다. 안전원의 창립기념일(8월9일)

라. 토요일

마. 그 밖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10. “의무보험”이란 피공제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각종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법령, 정관과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0.>

제2장 공제가입

제4조(공제가입 대상) 공제가입의 대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교육청사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을 말한다),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제5조(공제가입 신청) ① 회원은 자기가 소유·사용하거나 관리 책임을 지는 공제가입 대상을 안전원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교육시설공제 규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6조(현장조사와 점검) ① 안전원은 공제가입대상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안전원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공제회비의 결정과 납부 등) ① 공제회비는 개별약관의 요율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보상범위와 재난위험의 정도에 따라 할인율·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제회비의 납부 등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8조(알릴 의무)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이나 회원이 이용하는 교육시설 공제 정보망(이하 “공제정보망”이라 한다)으로 안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 신청서(질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변경할 사정이 생겼음을 안 경우
2. 안전원이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공제)에 중복 가입한 경우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안 경우
- ② 안전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공제회비가 증감하게 되는 때에는 증감된 공제회비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원에 알려야 한다.
- ④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공제정보망으로 알린 사항이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⑤ 안전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가된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안전원은 공제회비 결정 및 신규 공제제도 도입(담보범위 확대) 등 공제제도 변경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9조(책임기간) 배상책임공제의 책임기간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3장 공제급여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 상의 담보 지역(교육시설 부지)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한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한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하였던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하였던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가입증서 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안전원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마. 피공제자가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원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별약관에 따른다.

제12조(공제사고 발생 시 의무)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공제정보망으로 안전원에 알려야 한다.

1.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과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3. 피해자가 피공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한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미리 안전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0.>

가. 지급(변제)·승인 또는 화해

나. 소송의 제기 또는 중재·조정의 신청

제13조(보상의 제한)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안전원은 그 증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안전원은 제12조제1항제3호의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
다.

②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0조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1.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2.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2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변호사비용과 안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 증가한 손해

제14조(공제급여의 지급신청)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급여 신청서
2.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안전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15조(공제급여의 지급결정과 가지급 급여) 공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가지급 급여는 교육시설공제규정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16조(공제급여의 지급) ① 안전원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 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원은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안전원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한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1. 제10조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
2. 제10조제2호가목, 나목,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3. 제10조제2호다목,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④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공제사고에 대한 안전원의 공제급여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의무보험에 따른 보상액 제한) ① 안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보상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8조를 따른다.

②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8조(공제급여의 부담) ① 이 규정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각 계약을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이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다.

$$\text{공제급여}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배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그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공제급여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안전원의 공제급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4. 11. 20.>

제19조(피해자의 공제급여 청구)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안전원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안전원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안전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1항의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④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원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20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안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안전원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안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원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2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또는 대행 등) ① 안전원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안전원은 피공제자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협조 또는 대행을 한다.

③ 안전원이 제1항의 협조 또는 대행을 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안전원의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전원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④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행을 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4. 11. 20.>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⑤ 안전원이 제1항의 대행을 하는 경우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회수청구권을 안전원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제22조(공제급여심의위원회) ① 피공제자는 안전원의 공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제급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공제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현물보상) 현물보상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24조(대위) ① 안전원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지급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안전원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원이 요구하는 증거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은 권리의 보존 등을 위하여 회원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4. 11. 20.>

- ③ 안전원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위 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공제가입의 해지 등

제25조(공제가입의 해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공제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안전원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개정 2024. 11. 20.>
3. 회원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5.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제26조(공제가입의 취소) 공제가입의 취소는 교육시설공제규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안전원의 승낙을 받아 공제가입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등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은 “피공제자”로 본다. <개정 2024. 11. 20.>

제28조(공제회비의 환급) 공제회비의 환급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시설”은 “피공제자”로 본다. <개정 2024. 11. 20.>

제29조(준용규정) 위험의 분산, 소멸시효, 관할법원 그 밖에 배상책임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시설공제규정 제36조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부칙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공제”의 경우 공립회원에 한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국·공·사립 전체 회원에 대하여 운영한다.

② 시범운영기간 중 “교육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공제”의 사고당 한도액은 대물 5억원, 대인 3억원으로 설정한다.

부칙 (2019. 9.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0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